

은계유치원 규칙

제 정 2021.09.01.
1차 개정 2022.02.22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 10조와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은계유치원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본 유치원은 공립단설 “은계유치원”이라 칭한다.

제3조 (위치)

본원은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165에 위치한다.

제2장 교육연한 . 학기 및 휴업일

제4조 (교육연한)

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되, 만4세유아는 2년, 만3세유아는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 (학기)

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 (휴업일)

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관공서의 공휴일
2. 하계, 동계, 학년말 방학
3. 원장 재량휴업일
4. 개원기념일

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제2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,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조정 할 수 있다.

④ 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,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

제7조 (학급편제)

- ① 본원의 학급 수는 만3세반 4학급, 만4세반 4학급, 만5세반 5학급, 특수학급 2학급의 총15학급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학급수는 유아모집 결과에 따라 혼합연령으로 할 수 있다.
- ③ 방과후과정은 인가학급(정원)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지침에 의거하여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한다.

제8조 (유아 정원)

- ① 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 제 16조에 의거, 우리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유아 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.
- ② 방과후과정 유아 정원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
제9조 (교육과정)

- ①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과 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·운영지침에 따라 유치원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·적용한다.
- ② 방과후과정반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유아의 신체,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,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 (생활기록부 작성, 관리)

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, 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한다.

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

제11조 (수업일수)

-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이나,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.
-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이 경우 연간 30일 이내(공휴일, 방학, 휴업일 제외, 횟수 제한 없음)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.
※ 감염병 위기 단계‘경계’또는 ‘심각’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‘가정학습’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6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- ③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는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.
- ④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12조 (교육시간)

- ① 본원의 수업시간은 1일 4~5시간으로 편성한다. 단,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.
- ② 수업의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 (수업운영방법)

- ①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②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유치원과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동일연령 및 다른 연령의 학급과 혼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-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한다.
- ④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 (방과후과정 운영)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, 당해연도 경기도 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.

제15조 (건강검진 및 급식)

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.

제6장 입학, 재입학, 전학, 휴학, 퇴학, 수료 및 졸업

제16조 (입학)

-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하며, 특수학급의 경우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·배치된 유아로 한다.
- ② 입학 전형은 당해 학년도 유아모집 규정에 의한다.
- ③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규정 및 모집요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- ④ 정기 모집은 본 원의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규정 및 모집요강에 따라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 『처음학교로』에서 실시하고, 학기 중 추가 모집은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.

제17조 (재입학, 편입학, 전학)

- ① 우리 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, 전학하려는 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17조 2항에 의거,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만 3, 4세에 입학하여 재원 중인 유아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재입학을 우선 허가한다.
- ③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경우 취학유예를 하여 유치원 교육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.
- ④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유아로 취학 유예를 하여 유치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최소절차를 거친 후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입학절차를 적용하도록 한다.

제18조 (퇴학)

질병 등의 기타 가정 사유로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퇴학원서를 받아 처리한다.

① 유아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
2. 수업료 징수결정 후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 할 때
3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유아

제19조 (수료 및 졸업)

유치원장은 유아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, 졸업 인정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제7장 수업료, 입학금 및 기타 비용 징수

제20조 (입학금 및 수업료)

①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. 단, 지원제외 대상자의 경우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유아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다.

제21조 (기타 비용징수)

① 본원의 기타비용(수익자부담경비)은 간식비, 방과후과정운영비, 체험학습비, 특성화활동비, 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수익자부담경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,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수익자부담비는 미리 고지하고, 징수하며, 사업종료 후에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통지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22조 (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)

교육활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시기는 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.

제8장 각종 위원회 조직 운영

제23조 (유치원운영위원회)

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유치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4조 (인사자문위원회)

- ① 원내 제반 인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, 성과급관리 등에 관하여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, 민주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인사자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5조 (학부모회)

-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은계유치원학부모회를 구성·운영한다.
- ② 학부모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장 규칙개정절차

제26조 (규칙개정절차)

규칙의 개정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(법, 조례, 지침등) 의 범위 안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·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규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제3조(기타사항)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